

#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1997년 11월 일  
제출자 : 마포구청장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에 이루어진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기위함.

## 2. 주요골자

아래 재산을 연남동 동청사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97년도에 취득하려는 것임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천원)	취 득 시 기	취득사유	취득재산소유자 , 주소, 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면적 (㎡)					
1	대	연남동 250-9	(대지: 536. <sup>50</sup> , 건물: 284. <sup>04</sup> )	800,000	4/4분기	연남동 청사 신축부지	마포구 연남동 250-9 이화실	제입

## 3. 근 기

- 지방자치법(1995.12.29 법률 제5,069호) 제35조 제1항 제6호
- 지방재정법(1995. 1. 5 법률 제4,868호) 제77조 제1항
- 지방재정법시행령(1996.6.29 대통령령 제15,093) 제84조
- 서울특별시마포구유재산관리조례(1997.5.17 조례 제363호) 제36호, 제37조
- 서울특별시마포구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1994.9.15 규칙 제186호) 제29조

첨부 : 공유재산관리계획 1 부.

# 구유재산관리계획

## '97년도 관리계획총괄표(6-1)

회계명:일반회계

(단위:m',천원)

구분	상반기			하반기			합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1	399.5	840,000	3	12,845.1	3,597,500	4	13,244.6	4,437,500	
		건물				2	1,240.2	750,000	2	1,240.2	750,000	
		기타										
	1.매입	토지	1	399.5	840,000	3	12,845.1	3,597,500	4	13,244.6	4,437,500	
		건물				2	1,240.2	750,000	2	1,240.2	750,000	
		기타										
2.교환	토지											
	건물											
	기타											
3.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1.매입	토지										
		건물										
		기타										
2.교환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 '9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6-2)

회계명 : 일반회계

(변경전)

(단위 : m<sup>2</sup>, 천원)

일련 번호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 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면적 (m <sup>2</sup> )					
1	대지	연남동 515-24 -25	231.7 299.8 (531.5)	800,000	'97 하반기	연남동 신청사 건립부지	판회자의 4인 (경기도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794번지 강촌마을. 805동 301호	매입

(변경후)

(단위 : m<sup>2</sup>, 천원)

일련 번호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 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면적 (m <sup>2</sup> )					
1	대지	연남동 250-9	(대지: 536.5, 건물: 284.04)	800,000	'97 하반기	연남동 청사 신축부지	마포구 연남동 250-9 이 화 실	매입시에는 복수감정기관 의 감정가격 산술평균치 가격을기준으 로 협의취득 예정


# 취득하려는 재산의 위치도

## ■ 연남동 25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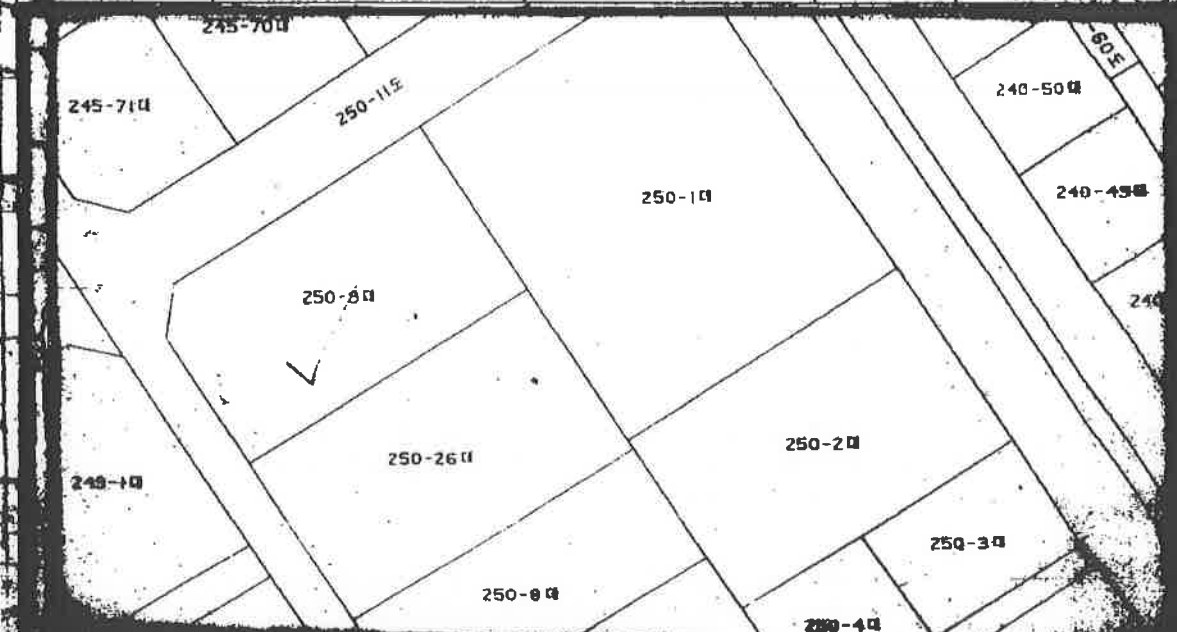
- 대 지 : 536.5㎡ (162.29평)
- 건 물 : 연와조 스타브
  - 층 수 : 지하 - 1층, 지상 - 1층
  - 용 도 : 주택
  - 연면적 : 284.04㎡ (85.92평)





고유번호		건 축 물 관 리 대 장			비고		세부1268-33 (83.2.4)호에의거가옥대장 예시 이기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950번지의 9 호					허가년월일		준공년월일		등재년월일																																																																																																																																				
		소재지						73.12.18		73.12.24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3">건</th> <th colspan="3">축</th> <th colspan="3">물</th> <th colspan="3">관</th> </tr> <tr> <td colspan="2">구 조</td> <td colspan="2">주 용 도</td> <td colspan="2">번</td> <td colspan="2">별</td> <td colspan="2">적</td> <td colspan="2">권</td> </tr> <tr> <td>연안</td> <td>주택</td> <td>시층</td> <td>중</td> <td>층</td> <td>층</td> <td>층</td> <td>층</td> <td>층</td> <td>층</td> <td>층</td> <td>층</td> </tr> <tr> <td>142.02</td> <td>142.02</td> <td>142.02</td> <td>284.04</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42.02</td> <td>142.02</td> <td>284.04</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3">소</td> <td colspan="3">유</td> <td colspan="3">소유자주소</td> <td colspan="3">주민등록번호</td> </tr> <tr> <td colspan="3">변동일자</td> <td colspan="3">사</td> <td colspan="3">변동사유</td> <td colspan="3">성명 또는 상호</td> </tr> <tr> <td colspan="3">처리일자</td> <td colspan="3">처리일자</td> <td colspan="3">처리일자</td> <td colspan="3">처리일자</td> </tr> <tr> <td colspan="3">74.6.28</td> <td colspan="3">신축</td> <td colspan="3">74.6.28</td> <td colspan="3">신축</td> </tr> <tr> <td colspan="3">소유권이전</td> <td colspan="3"></td> <td colspan="3"></td> <td colspan="3">75.01.29</td> </tr> <tr> <td colspan="3">74.6.28</td> <td colspan="3"></td> <td colspan="3"></td> <td colspan="3">신축</td> </tr> </table>												건			축			물			관			구 조		주 용 도		번		별		적		권		연안	주택	시층	중	층	층	층	층	층	층	층	층	142.02	142.02	142.02	284.04									142.02	142.02	284.04										소			유			소유자주소			주민등록번호			변동일자			사			변동사유			성명 또는 상호			처리일자			처리일자			처리일자			처리일자			74.6.28			신축			74.6.28			신축			소유권이전									75.01.29			74.6.28									신축		
건			축			물			관																																																																																																																																						
구 조		주 용 도		번		별		적		권																																																																																																																																					
연안	주택	시층	중	층	층	층	층	층	층	층	층																																																																																																																																				
142.02	142.02	142.02	284.04																																																																																																																																												
142.02	142.02	284.04																																																																																																																																													
소			유			소유자주소			주민등록번호																																																																																																																																						
변동일자			사			변동사유			성명 또는 상호																																																																																																																																						
처리일자			처리일자			처리일자			처리일자																																																																																																																																						
74.6.28			신축			74.6.28			신축																																																																																																																																						
소유권이전									75.01.29																																																																																																																																						
74.6.28									신축																																																																																																																																						
																																																																																																																																															
				새기1997년 10월 29일 <b>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b> (수입증지가 인영(첨부)되지 아니한 증명은 그 효력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제 목		토 지 이 용 계 획 학 인 서		처리기한	1 일
대 상 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u>영남</u> 동 <u>250</u> 번지 <u>8</u> 호				
내 용	① 국토	용도지역	도시	개발계획등의 수립여부.	
	② 도	용도지역	(전용.일반.준) 주거지역 (중심.일반.근린.유통) 상업지역 (전용.일반.준) 공업지역 (보전.생산.자연) 녹지지역		
	시	용도지구	종치. 미관(1.2.3.4.5종). 아파트. 방화. 도시설계 고도(최저.최고). 기타( )		
	인	도시계획시설	도로(저축.점함). 지정계건축선(저축.점함). 하천. 공원. 시장. 학교. 녹지. 광장. 기타( )		
	내	도시개발사업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지구. 시가지조성. 기타( )		
	외	구 역	개발제한구역(내.저축). 기타( )		
		도시계획일안사항			
③~⑦	군사시설. 농지. 산림. 자연공원. 수도. 해당없음.				
⑧	토 차 기 대	허가구역. 전입구역. 해당없음.		속 폭	500. 600. 1200. 3000
	가 타			도 면 호 수	8 호



본 도면으로는 법적측정 및 측량술 준수없음

구 청 장 인

의 참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정(안) 심사보고서

1997. 11. 11.  
총무재무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7년 11월 6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7년 11월 6일
- 다. 상정일자 : 제4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97. 11. 11.)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이 은 규

###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6호,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유재산관리조례제36조,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에 이루어질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의회와의 의결을 얻기 위함.

### 나. 주요 개정골자

아래 재산을 연남동 동청사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97년도에 취득하려는 것임.

일련 번호	재 산 포 사		추정가액 (천원)	취 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소유자 주소, 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면적(㎡)					
1	대	연남동 250-9 대지 : 536.50 건물 : 284.04	800,000	4/4분기	연남동 청사 신축부지	마포구 연남동 250-9 이화실	매입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건물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16일 제4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바 있는 연남동 동청사 신축예정부지를 취득함에 있어 그동안 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동청사 예정부지를 변경하여 취득하고자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임.

○ 당초 변경전 취득대상토지는 연남동 515-24, 25호상의 대지 531.5㎡ 이었으나 감정가에 의한 협의취득이 불가하므로 연남동 250-9호상의 대지 536.6㎡, 건물 284.04㎡로 변경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비용은 이미 '97년도 예산에 기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편성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이진표 위원) : 당초 연남동 515-24, 25호상의 재산을 매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본 변경안에 연남동 250-9호상 재산을 매입하기로 계획을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답변요지(홍 기 총무과장) : 복수 감정결과 평당 519만원 인데 소유자는 평당 700만원을 요구해 감정가격과의 차이가 너무 많아 부득이 연남동 250-9호상의 재산을 매입코자 함.
- 질의요지(이진표 위원) : 그러면 변경(안)의 내용대로 변경된 재산을 매입할 경우 감정가와 소유자의 매도하고자 하는 가격이 차이가 많을 시, 또 다시 본 계획안을 변경해야 하지 않은가?
- 답변요지(홍 기 총무과장) : 소유자가 건물을 포함한 대지 가격 8억을 지불하면 매도할 의사가 있고, 이미 소유자의 매도승낙서를 받아 놓았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 안 의 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